
2015년 u-강남 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5. 1.

강 남 구

목 차

제 I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 II 장 유지보수

제3조(유지보수 수행기준)

제4조(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제5조(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제6조(유지보수요원)

제7조(유지보수체계)

제8조(유지보수료)

제 III 장 예방점검 및 지원

제9조(정기점검실시)

제10조(정기점검)

제11조(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제12조(기술 등의 지원)

제13조(회의 · 교육 및 기술협조)

제14조(장비의 수리 및 예비 부품 확보)

제 IV 장 장애조치

제15조(장애복구)

제16조(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체상금)

제17조(계약의 해지)

제 V 장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

제18조(손해배상)

제19조(위험부담)

제20조(보안책임)

제21조(책임이행)

제22조(분쟁의 해결)

제23조(기타사항)

제 VI 장 각종 서류의 제출

제24조(용역착수시 제출서류)

제25조(용역수행시 제출서류)

2015년 u-강남 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제 I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강남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CCTV 및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각종 영상 서버, 네트워크 장비, 운영 소프트웨어들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점검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 ① 유지보수 : 장애 예방·복구, 각종 시스템·S/W의 관리, 운영환경 개선, 재해 예방, 관련기술의 지원 및 관련부품의 교체 등 관제시스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유지점검 : 유지보수중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검 행위를 말한다.
- ③ 유지보수요원 : "계약상대자"로부터 "발주기관"의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이미 "발주기관"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 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④ 유지보수료 :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부품비,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재계약비, 기타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⑤ 장애 : 현장 및 관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정도의 기능저하를 말한다.

제 II 장 유지보수

제3조 (유지보수 수행기준)

- ① CCTV 및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현재상태나 개선되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CCTV 및 관제센터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정기·비정기

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 ③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⑤ 관제센터는 유지보수를 신속한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CCTV 현장부문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강남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CCTV 및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강남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⑦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CCTV 및 관제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⑧ CCTV 장비 및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강남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⑨ CCTV 및 관제센터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 ① CCTV 및 관제센터 설비 등의 유지보수 대상은 “붙임1” 및 “설계서”와 같다.
- ②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문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유지보수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③ H/W, 운영체계, 응용S/W 및 데이터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 ④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기관의 예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실시일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월 예방점검 계획서를 매월 1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이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 ⑥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케이블포설 등 지원
- ⑦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작업 수행
- ⑧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 ⑨ 자가정보통신망은 36코어 절단사고 응급접속 및 시험을 10회로 산정하였으며 계약만

료일 까지 10회 미만시 정산처리 한다.

- ⑩ 유지보수 대상 이외의 강남구청에서 운영되는 CCTV 및 관제센터 장비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1차적인 문제 확인 및 설치업체에 수리요청 등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

제5조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착수일로부터~2015.12.31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에 같음하여 지급한다.
- ③ 유지보수는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 (유지보수요원)

- ①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및 차량지원
 - 기술인력 상주 : 6명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간 상주요원과 야간 교대 상주요원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기술인력 비상주 : 총 2명
 - 현장의 장애처리를 위한 CCTV 기술자 2인 이상이 항상 비상주 지원을 해야 한다.
 - 유지보수용 차량 4대 상시 지원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보수용 차량(크레인 2대, 점검차량 2대)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유지보수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③ 유지보수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0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총괄관리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4인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야한다.
- ⑤ 상주요원은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작업일지 등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고 월 유지보수내역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상주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 ⑧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상주요원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상주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⑨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상주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요원의 교체 시 10일 이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이력서 1통
 - 나 재직증명서 1통
 - 다 증명사진 2장
 - 라 신원진술서 2통(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 마 보안서약서 1매

제7조 (유지보수체계)

- ①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②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응소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시점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부득이한 상황으로 장애복구(보수)가 4시간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기기를 대체하는 등 CCTV 기능 유지 필요한 사항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자체조달 하여야 한다.

- ⑧ 유지보수가 종료되고 차기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3일(평일기준)간 u-강남도시관제 센터 운영전반에 대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⑨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센터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료)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1개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제III장 예방점검 및 지원

제9조 (정기점검실시)

- ① 정기점검의 종류는 월간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이 있으며, 월간점검은 월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 특별점검은 연2회 이상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은 월간 점검일지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다.
- ③ 정기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0조 (정기점검)

- ① 유지보수 정기점검은 월간점검으로 실시한다.
- ②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청구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관제센터내 DLP큐브, 향온향습기, 환기설비 등은 분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⑦ 현장 CCTV시스템은 산출내역서에 따라 하우징청소, 카메라 점검, 비상벨 점검 등을 실시한다.

제11조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 ① 수시점검이란 "발주기관"이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점검 완료 후 "발주기관"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특별점검이란 강남구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 외에 "발주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에 대한 지시에 의한 점검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④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기술 등의 지원)

- ①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교육 및 기술협조)

-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정기 간행물, 교육정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어린이학습체험관 방문자에게 체험교육, 홈페이지관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장비의 수리 및 예비부품 확보)

- ①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②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내부직원의 고의에 의한 손실, 기타(화재, 침수, 낙뢰) 사고 등으로 발생한 경우 우선복구 후 비용을 계상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③ *****
- ④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부품과 동일한 성능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전원공급 설비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 점검 및 장애시 긴급조치와 구성도, 배선도, 전력사용량 현황 등의 관리 등
 - 합체내 설치된 차단기 및 전원장치 관리 등
- ⑥ "계약상대자"는 중요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부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예비품을 비치하여, 장애 시 신속히 교체토록 한다.

제Ⅳ장 장애조치

제15조 (장애복구)

-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장애유형	구분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H/W, 현장 S/W 장애시		2	3	2	6
폴 등 중대한 장애시		2	6	2	8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말하며, 복구완료시간은 응소시

간이 포함됨.

- ②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체상금)

-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가산한다.
- ②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한다.
- ③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시간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제16조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24 × 복구지연시간
-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지체일수
- ⑥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⑦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⑧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 이행 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보수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15조"에 정한 장애복구 지연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에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V 장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

제18조 (손해배상)

-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험부담)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안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

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보안업무처리규정 및 강남구보안업무처리규칙을 적용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유지보수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직,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책임 이행)

- ①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2. 천재지변, 화재, 침수, 낙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제22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 ①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용역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④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제 VI 장 각종 서류의 제출

제24조 (용역착수시 제출서류)

- ① 착수계(용역 수행계획서 포함)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 1부.
 2. 상주인력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3. 기타
 - 가.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나. 유지보수 요원의 비밀 준수 각서
 - 다.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월) 각종 보고사항
 - 라.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제25조 (용역수행시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 현황조사서
 1. 아래의 현황 조사서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식은 별도협의)
 - 가. 시스템 현황 파악,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 구성도
 - 나. 전력선 배치도, 분전반 구성도, 전력 사용현황
 - 다. S/W 라이선스 파악 및 Application 운영 현황
 - 라. 각 시스템별 H/W, S/W, Application 현황
 - 마. 각 시스템별 Start/Stop 매뉴얼, 서비스 작동 확인 매뉴얼
 - 바. 각 시스템별 응급 조치 매뉴얼
- ② 기 타
 1. 비상연락망(변동 시 즉시 제출)
 2. 월간보고 : 정기점검 결과, 장애처리 현황 및 통계자료
 3. 수시보고 : 장애처리 결과